

2 0 2 1 사 회 적 기 업 인 증 설 명 회

사전 허가받지 않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무단 녹취 금지 안내

설명회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자료집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2021 사회적기업 인증설명회

2021 (Korea) Social Enterprise Certification Requirements

신나는조합



CONTENTS

사회적기업 인증설명회

제1장 사회적경제의 이해

제2장 사회적기업의 이해

제3장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 1 조직형태
 - 2 유급근로자고용
 - 3 사회적목적 실현
 - 4 이해관계자 참여의사결정구조
 -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 6 정관·규약 등 구비
 - 7 (상법상회사)이윤의 재투자
-

제4장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

제5장 사회적기업의 책임과 의무

제6장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제도

제1장 사회적경제의 이해

- 1 사회적경제란?
- 2 사회적경제의 배경과 역사
- 3 사회적경제의 정의
- 4 사회적기업의 제정배경

사회적경제란?

우리 곁에,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의 배경과 역사

사회적경제의 배경과 역사

- ✓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18세기 후반~19세기 초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등장
- ✓ 국내의 경우 1920년대 농민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사회적경제가 처음 등장하였으며, 이후 1960년대 신용협동조합 운동, 1980년대 생활협동조합 운동 등으로 발전
-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화된 실업문제, 고용불안, 심화되는 빈부격차, 지역 쇠퇴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

사회적경제의 정의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정의

- ✓ OECD :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들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활동**
- ✓ EU : 참여적 경영 시스템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사단, 재단 등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
- ✓ 캐나다 퀘벡 :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의 경제활동**

* 구성원·공동체의 필요 충족,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민주적 지배구조, 경제적 성과 추구, 출자액에 비례한 배당 금지, 해산시 잔여재산 타법인 양도

국내에서의 사회적경제 정의(사회적경제기본법안 중심으로)

- ✓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윤호중 의원(2016), 양경숙 의원(2020) 대표 발의(안)]
- ✓ 구성원 상호 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활동**[유승민 의원(2016) 대표 발의(안)]

사회적경제의 기본 원칙과 주요 주체

사회적경제의 기본 원칙

- ① (공익성)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가치 추구
- ② (자율과 독립성)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
- ③ (민주적 통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촉진
- ④ (잉여금의 분배 제한) 발생한 이익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우선적인 사용
- ⑤ (상호성)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의 촉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

구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자격부여	기업 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제공	조합원의 경제, 사회, 문화적 수요 부응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자활기업 참여를 통한 탈 빈곤
관련 법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중간지원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지정위탁 운영기관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지정 위탁운영기관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자치부 지정위탁 운영기관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자활센터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분 가능 이윤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 예비사회적기업 (부처/지역형) 지정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개방적 조합원 (1인 1표의 원칙) • 일반협동조합(신고제), 사회적협동조합(인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자 및 고용인력 70% 이상 지역주민으로 구성(5인일 경우 100%) •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 출자 및 경영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이상 • 모든 구성원에 대해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 수익금 배분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정 배경

- 외환위기를 전후로 한 저성장 경제발전기 도래
-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 급감
-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
- 내수 활성화의 기반인 서민경제의 중요성 부각 및 사회양극화 심화로 취약계층 사회통합력 제고 필요
- 저출산 고령화 및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도래로 국민들의 지불능력 확대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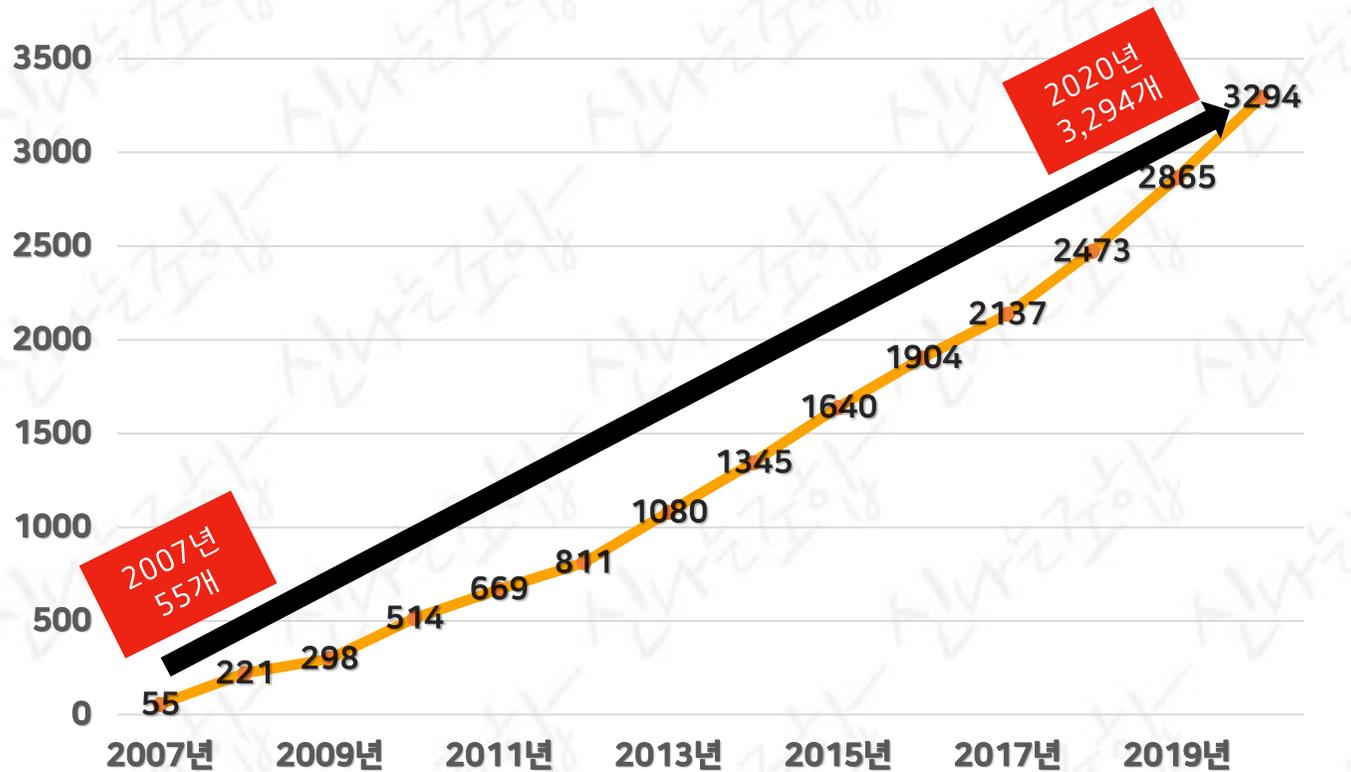
2020년 12월까지 73차에 걸쳐



총 3,294개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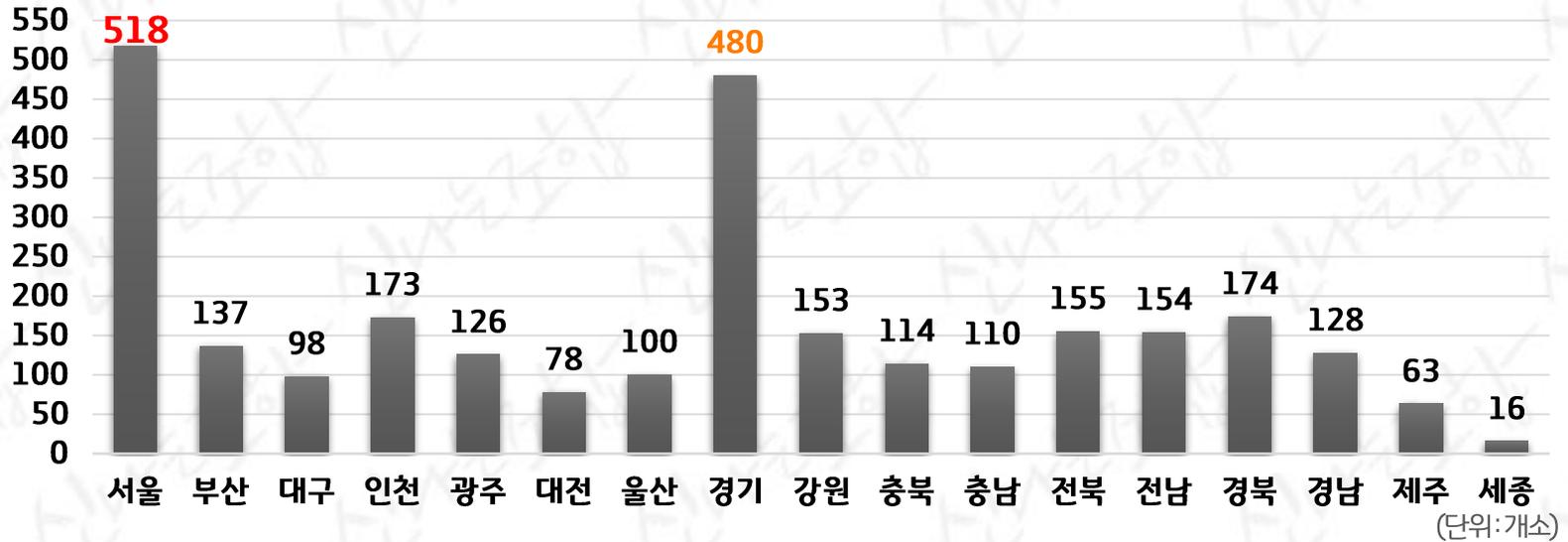
총 2,777개소 활동 중



(단위:개소)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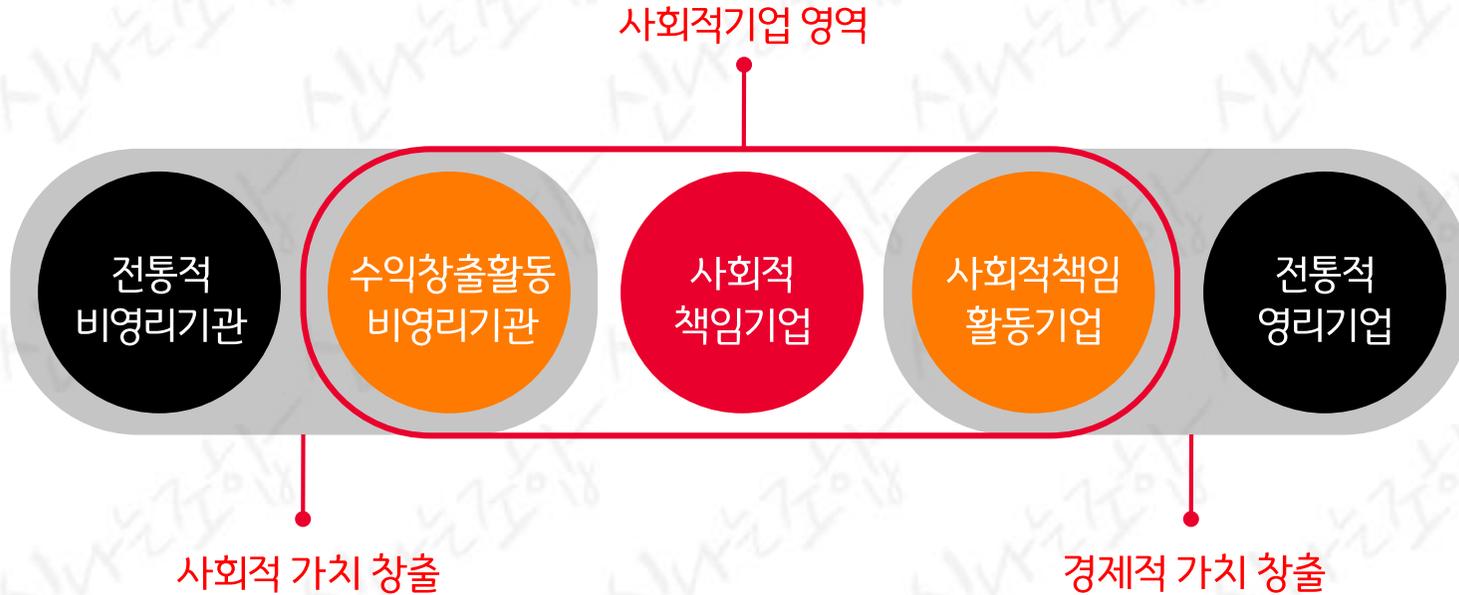
유형별 현황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창의·혁신)형
1,834(66.1%)	176(6.3%)	201(7.2%)	212(7.6%)	354(12.8%)

제2장 사회적기업의 이해

- 1 사회적기업의 개념
- 2 사회적기업의 정의
- 3 사회적기업의 단계
- 4 사회적기업의 절차

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의 정의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제1항)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계층

취약계층 범위

- 저소득자
- 고령자
- 장애인
- 갱생보호 대상자
-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은자
- 결혼이민자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범죄구조피해자
- 보호종료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가정폭력 피해자
-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사회적기업의 단계

예비 사회적기업

- ✓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 일부를 충족하고 있지 못한 기업을 지정 → 장차 요건을 보완해 향후 사회적기업 전환이 가능한 기업
 - ✓ 사회적목적 실현에 대한 판단근거: 정관 및 사업계획서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님

지정

- 지역형 : 광역자치단체
- 부처형 : 정부부처장



사회적기업

-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법적 인증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의 심의를 통해 인증을 받은 기업
 - ✓ 사회적목적 실현에 대한 판단근거: 인증신청 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사업실적
- *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 시 해당 기간만큼의 실적 기준

인증

고용노동부 장관

사회적기업의 절차

법인설립

민법상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상법상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합자조합 등)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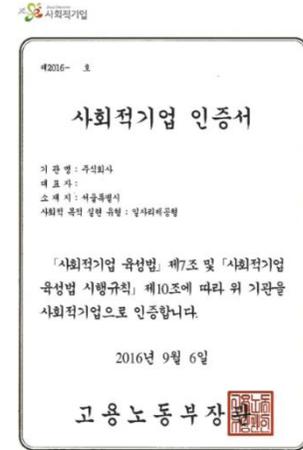


7가지 요건 + 6개월 실적

- 1 조직형태
- 2 유급근로자고용
- 3 사회적 목적 실현
- 4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 구조
-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 6 정관·규약 등 구비
- 7 (상법상회사) 이윤의 재투자



사회적기업 인증



✓ 6개월간의 실적 기준 (*6개월 미만 법인은 해당실적만 제출)

제3장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 1 조직형태
- 2 유급근로자고용
- 3 사회적 목적 실현
- 4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 구조
-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 6 정관·규약 등 구비
- 7 (상법상회사) 이윤의 재투자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1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지역사회공헌형 / 기타(창의·혁신)형

#4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6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일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6 정관의 필수사항

#7 이윤의 재투자

인증 심사기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사회적기업인증가능 조직형태 예시

- 사단법인, 재단법인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적)협동조합(일반법 및 개별법에 따른 모든 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포함)
-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 제외대상: 개인사업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출자 또는 출연 조직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 국세기본법 제 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1년 이내 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 미술관을 포함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6 정관의 필수사항

#7 이윤의 재투자

서류 준비 시 주의점

- ✓ 신청기업의지점 또는 지부, 지회
 - 영리조직은 지점의 사업실적을 모두 포함하여 인증 신청
 - 비영리조직은 사업자등록증상 지점은 포함하나, 지부·지회는 제외
- ✓ ① 대표자가 인증 사회적기업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
- ✓ ② 대표자 및 대표자 가족 등이 동종 업종의 별도 사업체 운영 시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협동조합 등 특수한 조직형태의 경우는 동일한 대표자에 대한 내용을 제한적으로 인정 가능

신청기업의 독립성 여부 판단 시: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기업의 출자구조, 상호거래 내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증빙서류

증빙서류	비 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이 해당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비영리민간단체만 해당
사업자등록증	- 필수 공통사항
주주명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지정서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지정 받은 경우만 해당

* 불인증서류: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6 정관의 필수사항

#7 이윤의 재투자

인증 심사기준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함”

유급근로자

정식으로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정규직, 기간제, 파트타임 등 사업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원 모두 포함)

유급근로자 산정기준

- 사회적기업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 단,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은 6개월 평균 3명 이상 고용
- 인증 신청 직전 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 (일자리제공형은 6개월 매월 말일 기준)
단, 대표자 및 임원,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무급/유급 자원봉사자는 유급근로자에서 제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근로자 임원의 기준이 다르므로 필히 상담 필요
- 전체 근로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고용코드 23, 26번)
- 유급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가입(적용 제외 대상 외), 최저임금법 준수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6 정관의 필수사항

#7 이윤의 재투자

서류 준비 시 주의점

근로계약 및 급여문제

-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연도별) 이상의 급여지급
→ 최저임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판단**
- ✓ 대표자는 시급제로 계산할 시에도 **주휴일에 해당하는 급여지급**
- ✓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와 근무시간, 휴게시간, 근무내용 등 근로기준법상 기재해야 하는 사항 준수
- ✓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누락 없이기재
→ 계약기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일별근로시간

2021년 최저임금 금액

시급	일당	월급		
		주40시간(월209시간)	주20시간(월105시간)	주15시간(월78시간)
8,720원	69,760원	1,822,480원	915,600원	680,160원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6 정관의 필수사항

#7 이윤의 재투자

증빙서류

증빙서류	비고
유급근로자 명부	- 근로자 현황, 일자리참여자 구분 현황 등
근로계약서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준수 여부
급여대장	- 실제 임금내역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
①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②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	-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 파악(고용보험 인터넷 조회) - 필수 공통사항(6개월 실적/월 말 기준)

※ 신청 직전 월 1개월 실적으로 제출하되, 일자리제공형/지역사회공헌'가'형/혼합형 신청 직전 6개월 기준으로 자료 제출(6개월 미만일 경우 해당 기간)

[유급근로자 명부 서식]

연번	근로자명	출생 년도	성별	취약계층유형	입사일	퇴사일	근로시간 (주단위)	비고
1	홍길동	1975	남	장애인	2012-05-01	2016-03-25	40	일반
2	사오정	1982	여	일반인	2015-08-15		40	전문인력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6 정관의 필수사항

#7 이윤의 재투자

2019년 최저임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변경사항

기존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

- ✓ 당해년도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448,827원)를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
 -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 ①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②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125,672원)를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6 정관의 필수사항

#7 이윤의 재투자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야 하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5가지 유형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유형	내용	기준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혼합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 ②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③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① 지역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20% 이상 ②, ③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의 판단에 있어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로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편의 지원, 일반영리기업 차별성, 기타 지역사회 공헌 등의 사업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 판단근거?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함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3-1 일자리제공형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6 정관의 필수사항

#7 이윤의 재투자

인증 심사기준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일자리제공 실적 인정 기준

- 전체 근로자 수가 6개월 평균 3인 이상
(대표자 및 임원,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무급/유급 자원봉사자는 유급근로자에서 제외)
- 잡급비율 10% 이하
- 비정규직 고용 비율 및 사유 확인
- 취약계층 의무 고용비율(30%)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심은 일자리 제공하고, 그 외 근로자에 대한 관심은 일자리 제공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례 등을 참조하여 위원회에서 판단

* **관심은 일자리란?**

① 최저임금 이상 지급, 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체결 여부로 판단
관심은 일자리 제공 실적 외의 기타 근로조건 개선 노력,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취약계층 고용비율 산정

$$\text{취약계층 고용비율} = \frac{\text{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취약계층 근로자수의 합}}{\text{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근로자수의 합}} \times 100$$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3-1 일자리제공형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6 정관의 필수사항

#7 이윤의 재투자

인증 심사기준

취업애로계층의 고용

유급근로자가 3인 미만이라도 사회적으로 고용환경이 가장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이나 노숙자, 도박·알코올 중독자, 갱생보호대상자 등을 평균 2인 이상 일자리로 고용한 경우 인증 신청이 가능
(해당 내용은 위원회에서 최종 판단)

취약계층 인정기간

취약계층 자격이 변동 가능한 유형(청년·경력단절여성,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의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증빙서류

증빙서류	비 고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 취약계층 범위 및 판단기준 참고
유급근로자 명부	- 신청 월 직전 6개월 기준 참고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서류	- 퇴사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및 상실확인
퇴사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6개월 이내 퇴사자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3-1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1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6 정관의 필수사항

#7 이윤의 재투자

구분	판단기준						증빙서류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전국가가구 월평균소득의100분의60이하인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 소득금액증명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20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2,389,428	3,725,918	5,693,311	6,816,471	6,654,467	
	60%	1,433,656	2,235,550	3,415,986	4,089,882	3,992,680	
	월보험료 납부액	52,701	82,178	125,571	150,344	146,770	
장애인	신체또는정신상의장애로장기간에걸쳐직업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자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단서, 복지카드
고령자	만55세이상인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성매매피해자	위계·위력·박력에이해준하는방법으로성매매를강요당한자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15세이상 29세이하인자 · 경력단절여성: 혼인·임신·출산·육아와가족성원의돌봄 등을이유로경제활동을중단하였거나경제활동을한적이없는여성중에서취업을희망하는여성 · 고용촉진장려금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시행령제26조제1항및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017-63호, 2017.11.8)에따른고용촉진장려금지급대상자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 경력단절여성 :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3-1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2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6 정관의 필수사항

#7 이윤의 재투자

구분	판단기준	증빙서류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읍면동 발급)
가정폭력피해자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확인서, 상담확인증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상 F-2 또는 F-5, F-6
강생보호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강생을 위한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지원확인서
범죄구조 피해자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지매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6개월 이내 출소자, 6개월 이내 소년원 퇴원자 -보호관찰 청소년 -노숙인 -약물, 알코올, 도박 중독자 -선천성 또는 후천성 치매 환자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난민 -보호종료 아동 	<p>*1년 이상 장기 실직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p> <p>-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p> <p>*<신설> 난민 보호종료 아동</p> <p>-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은 자</p> <p>-보호종료 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 이후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중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p>

베어베터

“곰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더 나은 세상”

- 네이버 공동창업자와 인사담당 임원이 2012년 공동설립
-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발달장애인들의 소망을 실현하는 회사
- 2012년 7월 발달장애인 3명 고용 → '18년 6월 199명 정규직 고용
- 인쇄(명함, 카드, 책, 포스터) 커피(로스탕) 쿠키, 꽃, 카페
- 월 매출 303만원이 증가할 때마다 1명 고용



BEAR MAKES THE WORLD BETTER.



(주)두손컴퍼니

“두손으로 하는 일에 가치를 담는다”

- 노숙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전문적인 물류 창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한국형 풀필먼트 업체(물류업체가 고객의 주문에 맞춰 제품을 소싱, 포장, 배송함)’가 되기 위하여 ‘폼고’라는 소규모 전문 물류대행 서비스를 운영 중 - 소규모 온라인 업체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나, 물류 업체들과 거래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음
-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뿐만 아니라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일터, 일자리 창출 대안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함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3-2 사회서비스제공형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6 정관의 필수사항

#7 이윤의 재투자

인증 심사기준

전체 서비스 제공대상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사회서비스란?

-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일 경우에만 사회서비스제공형으로 인증 신청 가능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분야 등의 서비스를 의미함)
- 그 외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사회서비스 실적 인정 기준

-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은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 전부
- 사회서비스 실적의 판단기준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공(연)인원, 제공시간, 제공횟수 등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본 사회적목적실현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인정(설립인가증 및 정관 확인)

취약계층 수혜비율 산정

$$\text{취약계층 수혜비율} = \frac{\text{신청 월 직전 6개월 동안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수혜자}}{\text{신청 월 직전 6개월 동안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취약계층 + 일반인)}} \times 100$$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6 정관의 필수사항

#7 이윤의 재투자

취약계층 인정 범위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요건과 동일

- 단, 사회서비스대상 취약계층은 일자리제공형에서 인정한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로 인정
 - + 조손가정
 - + 외국인근로자
 -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 + 학교폭력피해자
 - + 학교부청소년
 - + 중증질환자 등 포함

* 중증질환자의 경우 2019년 7월부터 변경되어 적용 예정인 장애인등급제에 따라 중증질환자 판단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3-2 사회서비스제공형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6 정관의 필수사항

#7 이윤의 재투자

서류 준비 시 주의점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증빙

- ✓ 서비스 수혜자 개인별로 취약계층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를 증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 수혜자가 속해 있는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을 연계하는 기관을 통해서 확인
- ✓ **사회서비스 실적의 기준은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산정(수혜 인원, 시간, 횟수, 금액 등)**

[사회서비스 실적산정기준 예시]

- (연)인원 기준: 전체 10명에게 서비스 제공 시 그 중 취약계층 3명 이상에게 서비스 제공
- 제공시간 기준: 총 100시간 서비스 제공 시 그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 제공횟수 기준: 총 100회 서비스 제공 시 그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회 이상 서비스 제공

기타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인정기준

- ✓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 실적 중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실적은 사회서비스 제공대상에 포함
-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실적 인정**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3-2 사회서비스제공형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6 정관의 필수사항

#7 이윤의 재투자

증빙서류

증빙서류	비고
사회서비스제공 확인서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활동 관련 내역 증빙서류	-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내역과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인원, 횟수, 금액 등)
정관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유형 확인(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출)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예시]

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예시)			
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소		
수혜자 (수혜기관)	성명 (기관명)		연락처
	주소		
사회 서비스 내용	서비스명		
	제공일시		
	수혜지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주식회사 위코노미

- 2013년 법인설립하여 2021년 인증
-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서울시내 시설보호종료아동, 퇴소청소년 대상 진로, 진학, 금융 등 다양한 분야로 1: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아동권리보장원

시설보호종료(예정) 아동 자립교육 등

시설보호아동의 퇴소 전 자립교육
금융, 주거, 복지지원 등 8대 영역 교육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표준금융교육 6단계 개발

청년의 금융이해도 향상을 위한 의무교육과정
커리큘럼, 교수설계, 온라인교육과정제작

-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2020 ~ 2009)
- 희망두배청년통장 (2020 ~ 2016)



두리함께 주식회사

- 무장애여행(barrier free) 활성화를 위해 장애유형별 맞춤형 여행상품 개발
- 장애유형별로 접근 가능한 여행코스를 개발하여 여행서비스 제공
- 2017년 2,455명의 보호자와 장애인에게 여행서비스 제공

세상 모든 여행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다

“하나님이 만든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세상은 느꼈습니다.”

-온도림(대리) 사업주어 중
아혜님

2017년 2월 첫 제주여행
2017년 3월 제1호분
현재 친구들과 여행 계획 중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3-3 혼합형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6 정관의 필수사항

#7 이윤의 재투자

인증 심사기준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

실적 인정 기준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산정방식은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기준 동일 적용

-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무고용비율 20%)에게는 관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 사회서비스 실적 인정 기준은 '사회서비스제공형'과 동일하게 적용

증빙서류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기준 동일 적용

(주)테스트웍스

2016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017년 사회적기업 인증

- 경력단절여성, 자폐성장아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대상 소프트웨어테스팅 전문 교육 제공 및 고용
- SW테스팅 외에도 자동화 소프트웨어테스트 프로그램 개발, AI 데이터 매니징 업무 등 자폐성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
- 취업 이후로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해 90%이상의 직원들이 국제테스터자격증 취득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3-4 지역사회공헌형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6 정관의 필수사항

#7 이윤의 재투자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데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

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생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나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지역의 빈곤, 낙후, 소외, 재난, 범죄 등 다양한 사회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유의제가 설정

다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사회적경제기업)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에 국한되지 않음

“지역사회공헌형(가,나형)”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

- ✓ 지역사회공헌형은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역의 문제를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또한, 해당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지역은 신청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신청가능. 하나의 시·군·구 등 특정한 자치단체 행정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지역 간 상호 연계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가능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3-4 지역사회공헌형 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6 정관의 필수사항

#7 이윤의 재투자

인증 심사기준

지역의제 확인

- 해당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생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지역 내 프로보노 활동, 지역 축제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자원 연계활동 가능
- * 지역 내에는 기업 본사만 있고, 실질적인 생산공장이나 영업사장은 다른 지역에만 위치할 경우 불인정
- * 사업추진이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실확인서에 기술

실적인정기준

-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또는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산정방식은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기준을 동일적용
- *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무고용비율 20%)에게는 관찮은 일자리를 제공

*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

— 지역취약계층 고용 비율(20%)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비율(20%)을 충족하면 이 유형으로 인정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3-4 지역사회공헌형 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6 정관의 필수사항

#7 이윤의 재투자

증빙서류

증빙서류		비 고
지역 취약계층 고용 (지역의 취약계층 20% 고용하는 경우)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취약계층 유형 및 거주지 -취약계층 고용 비율 충족 여부
	유급근로자 명부	-전체 근로자수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	-매월 말일 기준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파악
	정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사회적협동조합 인가유형 확인
지역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20%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관련 증빙서류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충족 여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3-4 지역사회공헌형 나-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6 정관의 필수사항

#7 이윤의 재투자

인증 심사기준

- 빈곤, 낙후, 소외, 재난, 범죄 등의 **다양한 지역 사회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고유 의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함**
 -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의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과 사회문제라고 인식하는 이유 및 해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함
 - 의제 설정 및 해결과정에서 전문가의 참여,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등 차별화된 요소가 포함되어야 함
 -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사업에 지출된 **비용(매입액) 또는 수입(매출액)이 같은 기간 동안 신청기업의 전체 지출 또는 수입의 40% 이상**이어야 함
 -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신청기업 전체 수입액 또는 지출액과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분야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을 비교
- ※ 단,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판단 (6개월 미만일 경우 해당 기간)

증빙서류

증빙서류	비 고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 등의 회계서류	-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분야의 수입 또는 지출금액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6 정관의 필수사항

#7 이윤의 재투자

#3-4 지역사회공헌형 다-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인증 심사기준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이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말함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의 성격에 맞는 컨설팅 기법을 개발, 적용하여 해당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 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사업에 지출된 비용(매입액) 또는 수입(매출액)이
같은 기간 동안 신청기업의 전체 지출 또는 수입의 40% 이상이어야 함
-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의 신청기업 전체 수입 또는 지출액과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 지원 사업 분야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을 비교

※ 단,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판단 (6개월 미만일 경우 해당 기간)
※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유형

증빙서류

증빙서류	비 고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 등의 회계서류	- 지역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을 지원한 사업 분야의 수입 또는 지출 금액
수혜기관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 수혜기관이 사회적경제조직임을 확인하는 서류

초의차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 전남 무안군에 소재
- 이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을 토대로 하여, 지역 브랜드 제품을 개발하고 그 제품으로 초의차를 브랜드화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제시
- 연잎 채취 등 지역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행복도시락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은

결식이웃 도시락 사업을 통해 공공급식 사회서비스의 품질개선과 양극화 해소, 근로 빈곤층의 빈곤 완화를 사회문제로 제시

- 결식이웃에게 안전한 공공급식 사회서비스 제공
 - 도시락형태로 양질의 영양품질을 확보한 식사제공
 - 정부 미지원 사각지대 결식이웃 발굴 및 지원방안 마련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지원
 - 정부미지원 저소득층 차상위 근로빈곤층 등의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역 급식센터 설립, 지원으로 총 380여개 일자리 창출



SE임파워사회적협동조합

“지식서비스로 사회적기업을 돕는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창업 생태계조성과 사회혁신을 위한 인큐베이팅, 액셀러레이팅 등 다각적 창업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공간, 투자자금조달, 사업모델개발, 판로지원, 디지털 바이오 사회혁신 프로젝트 개발 등)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3-5 기타(창의·혁신)형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6 정관의 필수사항

#7 이윤의 재투자

인증 심사기준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

<예시>

- (취약계층 지원) 당해기업이 취약계층 고용,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는 않으나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 (취약계층 편의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유·무형의 콘텐츠를 개발, 생산,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편의를 증진하는 경우
- (일반 영리기업과 차별성) 일반 영리기업과는 차별화된 요소를 가지고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 (기타 지역사회공헌 등)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직의 설립취지, 조직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취약계층의 참여 및 지원정도, 지역사회 기여 및 공헌도, 참여자·수혜자에 대한 복지프로그램 구비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취약계층 고용,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에 대한 계량화가 가능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기업의 주된 활동 이외의 실적 및 사회공헌활동(지역사회기부 등)은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에 해당하지 않음

증빙서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적합 여부는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기타(창의·혁신)형 사례(취약계층 지원)

THE BIG ISSUE KOREA

빅이슈코리아

“당신이 읽는 순간, 세상이 바뀝니다!”

- 홈리스에게는 경제적 자립을, 사회에는 홈리스의 가능성을, 시장에는 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
- 홈리스에게만 잡지 판매의 권한을 주어 자립할 수 있게 지원
- 권당 5,000원에 판매되며, 이 가운데 2,500원(50%)이 판매원에게 돌아간다.



기타(창의·혁신)형 사례(취약계층 편의제공)

에이유디사회적협동조합

“모두가 행복한 소통”

2014년 비영리조합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보건복지부)
2016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019년 사회적기업 인증

- 청각장애인에게 소리를 눈으로 보여주는 의사소통 지원사업
 - 소리를 문자로 통역하여제공하는 사회서비스로 국가공인 전문 속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문자통역사를 통해 지원(현장/원격/개인 문자 통역 서비스 등)
- 소리로 전달되는 정보를 시각적인자막으로 보여주는 보조공학 기기지원 사업
 - 실시간 문자 통역웨어타이핑 App 플랫폼 개발
 - 문자 통역사 없이도 인공지능 음성인식을 통해 이용가능한 문자통역웨어톡 앱 개발
-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소리를 눈으로 보는
웨어타이핑을 소개합니다.

AUD 문자통역 지원 현황

누적건수
1478건

누적시간
4840시간

에이유디의 문자통역 서비스는 국내 유일의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타(창의·혁신)형 사례(취약계층 편의제공)

주식회사 녹색친구들

2016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2018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018년 사회적기업 인증

“모두가 행복한 사회주택”

- 2011년 설립된 기업으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사업, 빈집살리기 사회주택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택 모델
- 토지의 사회적 공공성을 극대화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에 기여하고, 주거를 통하여 공동체를 만들고 마을을 복원하여 사람을 세우는 가치를 추구함
- 2018년 기준 사회주택 500세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종합건설 회사로 시행 및 시공과 임대관리까지 운영 체계를 갖추어 원가를 낮추고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향상해 나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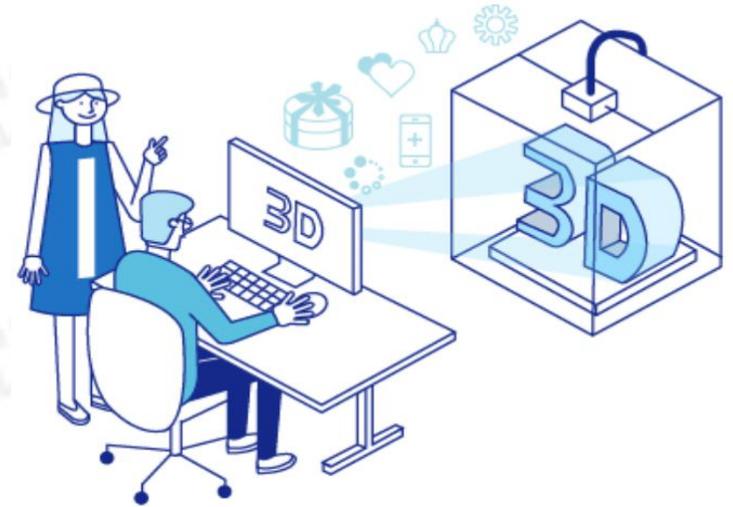


기타(창의·혁신)형 사례(일반 영리 기업과 차별성)

(주)그림플레이

2016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019년 사회적기업 인증

- 장애인 학습 보조 기구를 스마트 ICT 기술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맞춤 주문 제작
-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상용보조공학기기 선정 품목 등록 제품
 - 손 모양 맞춤형 필기보조도구
 - 3D 프링팅 맞춤형 식사보조도구(용도에 맞게 탈부착 가능)
 - 유니버설 맞춤형 그림보조기구(장애인/류마티스 관절염/노인 등)
- 3D 프린팅 기술을 도구로서 활용하여 차별화 된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의사결정구조 **○**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6 정관의 필수사항

#7 이윤의 재투자

인증 심사기준

“ 당해 기업의 임원이나 이사 이외도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함”

이해관계자 참여 근거 명시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함
* 해당 규정이 명시된 이후의 의사결정구조 운영 실적만을 인정

의사결정구조의 구성

중요 의사결정구조(이사회)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근로자대표 및 외부이해관계자(사외이사)가 참여
* 근로자대표가 선출되기 전부터 등기임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관리직 여부나 실제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지, 우리사주제 혹은 종업원지주제 형태로 다수의 근로자가 주식을 소유하는지 등에 따라 판단

의사결정구조의 실질적 운영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의 의사결정기구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사 취임 이후의 회의 실적을 인정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6 정관의 필수사항

#7 이윤의 재투자

인증 심사기준

주된 의사결정구조의 기준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구조로 인정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는 정관·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

협동조합의 이해관계자 참여

협동조합기본법 제 44조 제 3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임원은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음

▶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주된 의사결정구조로 인정(사회적기업요건에만 해당)

조합원 수	의사결정 구조	비고
10인 이하의 협동조합	- 이사회, 운영위원회 둘다 인정	- 임직원 겸직 가능한 경우 ① 조합원의 2/3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2/3 이상인 직원협동조합 ② 사회적협동조합
10인 이상의 협동조합	- 운영위원회 인정	

***사회적협동조합은 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 그 설립 및 운영목적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고려하여 조합원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해야 법인 설립이 인가됨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6 정관의 필수사항

#7 이윤의 재투자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구성 절차와 증빙서류

절차	증빙서류	비고
① 정관개정&등기	공증받은 정관 개정본 (※비영리민간단체는 규약 또는 운영 규정)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명시된 조항 유무
② 근로자대표 선출&이사취임, 사외이사 선임&취임	근로자대표 선출 동의서	- 협동조합을 제외한 법인의 경우에 해당 (단, 비영리민간단체나 임직원 겸직이 불가능한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예외)
③ 이사 등기	등기부 등본 (말소사항 포함)	- 취임일 명시
④ 이사회 실시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운영위원회) 명부	- 근로자대표와 사외이사 취임일 이후 근로자대표(이사)와 사외이사가 참여한 이사회 - 신청 전 6개월 내 개최한 이사회 회의록만 인정 - 이사회(운영위원회) 현직 상황 정보 작성 제출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6 정관의 필수사항

#7 이윤의 재투자

서류 준비 시 주의점

근로자 대표 선출

- ✓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함
- ✓ 근로자 대표 선출에 대한 회의록 또는 근로자들의 동의서 등 구비

정관 예시

- ✓ 제00조 (이사와 감사의 선임)
 - ① 이사 및 감사는 제00조의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 ② 이사 중 1인 이상은 근로자 대표로 선임하며, 사회서비스 수혜자나 외부사업관련 전문가, 연계기업·연계기관 인사, 후원자, 지역사회 인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 ③ 대표자와 직접적 이해관계자는 근로자 대표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6 정관의 필수사항

#7 이윤의 재투자

인증 심사기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총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어야 함”

계산방법

노무비(A)	영업수입(B)	영업수입(B) / 노무비(A)
인증 신청 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총 노무비	인증 신청 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총 영업수입	영업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경우 충족

(예시) 6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노무비)가 1천만원일 경우, 영업수입은 5백만원 이상이어야함

*영업활동판단기준?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노무비 대비 50% 이상일 것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6 정관의 필수사항

#7 이윤의 재투자

인증 심사기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총수입		총비용
매출액(영업활동 수입)	영업외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활동과 무관한 정부지자체 보조금(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시설운영비 등) 회비, 가입비 모기관 지원금(법인전입금) 기타 후원금, 기부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원가(제조공사원가 포함) 판매와관리비 영업외비용 법인세 등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영업수입을 말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음
공공매출에 의한 수입, 바우처사업수입은 영업수입으로 인정

- 지원금, 보조금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발주처의 공모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하고 계약한 경우 인정가능

*예시) 경쟁공모를 통한 자치단체급식사업 등

노무비의 기준

노무비	포함	인건비(세전금액), 대표자급여, 제수당, 상여금, 일용임금, 퇴직금(지급금)
	제외	교육훈련비, 퇴직급여충당금, 사용자부담사회보험료, 용역비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6 정관의 필수사항

#7 이윤의 재투자

서류 준비 시 주의점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함
영업활동 실적은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판단

- 회계사나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나, 영업수입 기간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6개월로 안분하여 계산

- 신청기업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을 기준으로 계산

* 자본 완전잠식(부채>자산) 등 지속가능성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불인증 (재무현황 등 추가자료 제출가능)

증빙서류

증빙서류	비 고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신청일 직전 6개월 이상의 실적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1년 이상 실적 확인 - 회계(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자료만 인정
계정별원장	- 회계(세무)사무소에 요청하여 구비
사업자등록증	- 사업 개시일
급여대장	- 노무비 내역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6 정관의 필수사항

#7 이윤의 재투자

인증 심사기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라 법정사항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함”

필수 기재사항

- 01 목적
- 02 사업내용
- 03 명칭
- 0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0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사회적기업인증 요건 반영)
- 0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은 회계연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 07 출자 및 용자에 관한 사항
- 0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0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은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기금 등에 기부하는 내용이 포함됨
-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사회적기업의 지부, 자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6 정관의 필수사항

#7 이윤의 재투자

인증 심사기준

정관 작성 시 유의사항

01 설립목적

법인 설립목적에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목적이 명기되어야 한다.

02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이사회, 운영위원회, (주주)총회 등과 같은 최고의사결정기구를 명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한 실제 의사결정이 팔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03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재정, 재산 및 회계(수익사업, 잉여금처분,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이익배당,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한다는 사항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

04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회원(조합원), 조직과 임원(이사감사), 사무처, 사무국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사회나 사무국에서 별도 규정으로 처리 할 경우 인사규정이나 운영규정을 제출해야 한다. 유급근로자 10명 이상의 사업장은 관할 고용지청에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6 정관의 필수사항

#7 이윤의 재투자

증빙서류

증빙서류	비 고
조직형태가 법인인 경우 - 정관	- 10가지 필수조항 유무 확인 - 필수조항에서 별도규정으로 둔다고 명시한 경우 별도 규정 확인 (취업규칙 등)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 규약(운영규정)	- 공증 필요

*신나는조합 홈페이지
사회적기업 자료실에서
조직형태별 정관샘플
다운로드 가능!!

- 사회적협동조합은 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함
- 정관(공증불필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부부처에서 별도 정관 변경허가를 받는 조직형태의 경우 공증 불필요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6 정관의 필수사항

#7 이윤의 재투자

인증 심사기준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등은 회계 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함”

정관 상의 명시

- 정관 ‘이익금의처분’ 관련 조항에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 규정
- 정관 ‘해산 및 청산’ 관련 조항에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는 내용 규정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기준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 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

배분 가능한 이윤의 범위

-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
-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법정적립금 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
- 예비사회적기업 중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은 지정 이후부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수입금 사용, 이익배당, 수익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6 정관의 필수사항

#7 이윤의 재투자

서류 준비시 주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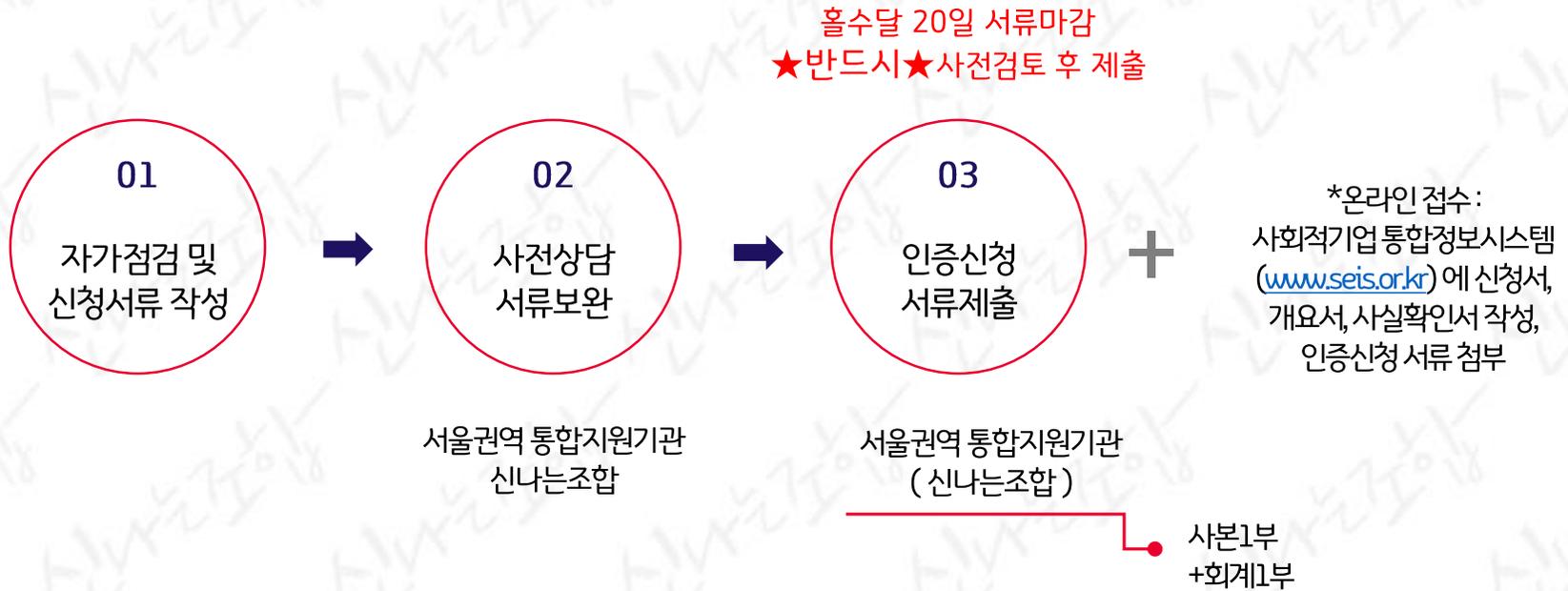
정관 예시

- ✓ 제00조 (이익금의 처분) ①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2.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적립(이익금에서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의 3분의 2 이상)
 3. 주주배당금
 4. 기타의 이익금 처분액
- ② 제1항 제2호의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적립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비용(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2. 지역사회기부 등 사회공헌사업비
 3.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비등
- ✓ 제00조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법인 해산 시 부채를 변제하고도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및 공익적기금 등에 기부한다.

제3장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

- 1 사회적기업 인증상담
- 2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 3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 4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서류 체크리스트

사회적기업 인증상담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 01 인증 계획 공고 ● 고용노동부
- 02 신청기업 사전상담 ● 서울권역 통합지원기관(신나는조합)
- 03 신청서 제출 ...격월 (홀수월) ●
 - ✓ 서울권역 통합지원기관(신나는조합 / 사본파일 메일로 송부)
 - ✓ 통합정보시스템 등록(온라인접수)
- 04 형식요건 검토, 현장실사 ...격월 (짝수월)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서울권역 통합지원기관(신나는조합)
- 05 인증심사 소위원회 ● 고용노동부
- 06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 고용노동부
- 07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 고용노동부
- 08 인증서 교부 ● 고용노동부

연중 수시접수 / 연간 6번 심사(짝수달)

홀수달 20일 접수마감 / ★반드시★ 사전검토 후 제출
 (1월 20일, 3월 20일, 5월 20일, 7월 20일, 9월 20일, 11월 20일)

★ 기업 및 대표자는 04번 현장실사까지만 참여
 ★ 05 소위원회와 06 육성위원회에 진흥원과 신나는조합이 기업을 대표하여 심사에 참석하므로, 사전상담 시 정확하고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신나는조합홈페이지▶사회적기업팀▶'자료실'에서다운로드가능)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구분	제출서류	비고						
	인증신청서, 구비서류 첨부, 유급근로자 명부, 사실확인서, 인증개요서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각 해당 유형)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계산법(가결산 손익계산서 상 금액) <input type="checkbox"/> 총사업비 : 매출원가+판매비+영업외비용+법인세+기타비용 <input type="checkbox"/> 총수입(B)/총노무비(A) : {영업수입(매출액) ÷ 노무비} × 100(%) *재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를 매출액에서 제외한 금액	5개 유형 중 택						
	<table border="1"> <thead> <tr> <th>포함</th> <th>불포함</th> </tr> </thead> <tbody> <tr> <td>노무비 인건비(세전금액), 잡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td> <td>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교육훈련비, 외주 임가공용역비</td> </tr> <tr> <td>총수입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원재료비 및 상품매출액은 공제</td> <td>영업외수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보조금, 후원금, 기부금, 회비, 가입비, 모(편)원지급금</td> </tr> </tbody> </table>	포함	불포함	노무비 인건비(세전금액), 잡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교육훈련비, 외주 임가공용역비	총수입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원재료비 및 상품매출액은 공제	영업외수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보조금, 후원금, 기부금, 회비, 가입비, 모(편)원지급금	
포함	불포함							
노무비 인건비(세전금액), 잡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교육훈련비, 외주 임가공용역비							
총수입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원재료비 및 상품매출액은 공제	영업외수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보조금, 후원금, 기부금, 회비, 가입비, 모(편)원지급금							
SEIS 직접 입력	[첨부파일] <input type="checkbox"/> 사이버교육수강확인증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이력서, 대표자 사회공헌활동 실적 및 표창 <input type="checkbox"/>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input type="checkbox"/> 인증개요서 [첨부파일-사업내용] <input type="checkbox"/> 기업소개서 [첨부파일-수익확보수단] <input type="checkbox"/> 수익확보수단 (*각 사업별 매출 비율 작성) <input type="checkbox"/> 기업의 특허증, 허가증, 자격증, 인가증, 직접생산증, 최저임금적용제외공문, 기계 보유관련 등							
	인증신청서, 구비서류 첨부, 유급근로자 명부, 사실확인서, 인증개요서							
	구비서류①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SEIS에 파일 첨부)							
제출서류	비영리민간 단체를 제외한 모든 조직형태 <input type="checkbox"/>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말소사항포함 (*지정 모두 등기로 필수)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소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지정 별도 사업자/사업장 있을 경우 <input type="checkbox"/> 지정 사업자등록증 <input type="checkbox"/> 지정 사업장 소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input type="checkbox"/> 총사업자등록내역 (대표자명역)	파일 1개로 묶어서 제출						

	(*국제청 홈페이지>신청/제출>신청업무(사실증명신청) 대표자 명의 타 사업장 있을 경우 <input type="checkbox"/> 해당 사업자등록증 <input type="checkbox"/> 해당 사업자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주식회사) <input type="checkbox"/> 주주명부 <input type="checkbox"/>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 <input type="checkbox"/> 주주동의서(필요시) (합동조합) <input type="checkbox"/> 조합원명부(합동조합) 비영리민간 단체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구비서류②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SEIS에 파일 첨부)																																																	
공통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서식7> (*일직일 전월) <input type="checkbox"/>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신청일 전월 기준 6개월 기간 조회) <input type="checkbox"/> 고용보험상실신고서(신청일 전월 6개월 간 회사 인원 전월)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가'형, 혼합형: 6개월분 / 그 외 유형은 신청 전월 1부] <input type="checkbox"/>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매월 말 일 기준) <input type="checkbox"/> 유급근로자 명부<서식8>(매 월 말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input type="checkbox"/> 근로계약서(6개월 간, 퇴사자 포함) <input type="checkbox"/> 급여대장 <input type="checkbox"/> 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인증 관련 사항 확인서<서식9> : 반드시 대표자가 직접, 허위사실 없이 작성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input type="checkbox"/> 취업규칙 및 접수증(10인 이상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회적 목적 관련 증빙서류	*신청 직전월 기준으로 하되,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가'형, 혼합형은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근로한 모든 유급근로자에 대한 서류를 제출 *영업활동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그 기간																																																
유형별 제출서류 및 사전체크사항	<input type="checkbox"/>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직 있을 경우) <table border="1"> <thead> <tr> <th>월</th> <th>1</th> <th>2</th> <th>3</th> <th>4</th> <th>5</th> <th>6</th> <th>7</th> <th>8</th> <th>9</th> <th>10</th> <th>11</th> <th>12</th> <th>합계</th> <th>평균</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td> </tr> <tr> <td>취약</td> <td></td> </tr> </tbody> </table> <input type="checkbox"/> 유급근로자(3인↑)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고용비율(30%↑) <input type="checkbox"/> 랜선행은일자리 <input type="checkbox"/> 임금수준(최저임금↑) <input type="checkbox"/> 고용형태(기간의 정함×) <input type="checkbox"/> 근로시간(주15시간↑) <input type="checkbox"/> 고용안정성(고용조정 이력×) <input type="checkbox"/> 기타: 일자리창출/근로조건 개선 등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평균	비율	전체																취약																*인증신청일 직전 6개월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영업활동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평균	비율																																			
전체																																																		
취약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 사회적서비스제공형	<input type="checkbox"/> 기타 근로자 복지 제공 관련 증빙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류<서식10> <table border="1"> <thead> <tr> <th>월</th><th></th><th></th><th></th><th></th><th></th><th>합계</th><th>평균</th><th>비율</th></tr> </thead> <tbody> <tr> <td>전체</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취약</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수혜비율(30%↑)	월						합계	평균	비율	전체									취약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확인 必 수혜기관 직인 必	□ 기타 근로자 복지 제공 관련 증빙 [지역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류<서식10> <table border="1"> <thead> <tr> <th>월</th><th></th><th></th><th></th><th></th><th></th><th>합계</th><th>평균</th><th>비율</th></tr> </thead> <tbody> <tr> <td>전체</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취약</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input type="checkbox"/> 지역 취약계층 수혜비율(20%↑)	월						합계	평균	비율	전체									취약									□ ② (나)사회 문제해결 □ 고용의제 관련 서류 -의제: -근거: □ 사업 수행 증빙(협약서, 사업보고서, 계산서 등) <table border="1"> <thead> <tr> <th>월</th><th>(직전6개월)합계</th><th>평균</th><th>비율</th></tr> </thead> <tbody> <tr> <td>전체</td><td></td><td></td><td></td></tr> <tr> <td>고용의제 관련사업</td><td></td><td></td><td></td></tr> </tbody> </table> <input type="checkbox"/> 해당 사업의 수입 또는 지출 비중 (40%↑)	월	(직전6개월)합계	평균	비율	전체				고용의제 관련사업			
	월						합계	평균	비율																																																													
전체																																																																						
취약																																																																						
월						합계	평균	비율																																																														
전체																																																																						
취약																																																																						
월	(직전6개월)합계	평균	비율																																																																			
전체																																																																						
고용의제 관련사업																																																																						
□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직 있을 경우) <table border="1"> <thead> <tr> <th>월</th><th></th><th></th><th></th><th></th><th></th><th>합계</th><th>평균</th><th>비율</th></tr> </thead> <tbody> <tr> <td>전체</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취약</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input type="checkbox"/> 유급근로자(3인↑)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고용비율(20%↑) <input type="checkbox"/> 랜참은일자리 <input type="checkbox"/> 임금수준(최저임금↑) <input type="checkbox"/> 고용형태(기간의 정함×) <input type="checkbox"/> 근로시간(주15시간↑) <input type="checkbox"/> 고용안정성(고용조정 이력×) <input type="checkbox"/> 기타: 일자리창출/근로조건 개선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근로자 복지 제공 관련 증빙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류<서식10> <table border="1"> <thead> <tr> <th>월</th><th></th><th></th><th></th><th></th><th></th><th>합계</th><th>평균</th><th>비율</th></tr> </thead> <tbody> <tr> <td>전체</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취약</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수혜비율(20%↑)	월						합계	평균	비율	전체									취약									월						합계	평균	비율	전체									취약										□ ③ (다)사회적경제조직지원 □ 수행 사업 관련 서류 -사업: □ 사업 수행 증빙(협약서, 사업보고서, 계산서 등) (*수혜기업의 사회적경제조직 여부 확인) <table border="1"> <thead> <tr> <th>월</th><th>(직전6개월)합계</th><th>평균</th><th>비율</th></tr> </thead> <tbody> <tr> <td>전체</td><td></td><td></td><td></td></tr> <tr> <td>고용의제 관련사업</td><td></td><td></td><td></td></tr> </tbody> </table> <input type="checkbox"/> 해당 사업의 수입 또는 지출 비중 (40%↑)	월	(직전6개월)합계	평균	비율	전체				고용의제 관련사업				
월						합계	평균	비율																																																														
전체																																																																						
취약																																																																						
월						합계	평균	비율																																																														
전체																																																																						
취약																																																																						
월	(직전6개월)합계	평균	비율																																																																			
전체																																																																						
고용의제 관련사업																																																																						
□ 지역사회공헌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의제: _____ [지역 취약계층 고용] <table border="1"> <thead> <tr> <th>월</th><th></th><th></th><th></th><th></th><th></th><th>합계</th><th>평균</th><th>비율</th></tr> </thead> <tbody> <tr> <td>전체</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취약</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input type="checkbox"/> 지역취약계층고용비율(20%↑) <input type="checkbox"/> 랜참은일자리 <input type="checkbox"/> 임금수준(최저임금↑) <input type="checkbox"/> 고용형태(기간의 정함×) <input type="checkbox"/> 근로시간(주15시간↑) <input type="checkbox"/> 고용안정성(고용조정 이력×) <input type="checkbox"/> 기타: 일자리창출/근로조건 개선 등	월						합계	평균	비율	전체									취약										□ 기타(창의혁신)형 □ 기업의 사회적목적 및 실적 설명 서류 □ 사업 수행 증빙(협약서, 사업보고서, 계산서 등) □ 고용/사회서비스 실적 계량화 가능 여부 : □소셜미션 및 문제해결 방식 □기타(창의·혁신)형 선택 이유 -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 편의 제공 - 일반 영리기업과 차별성 - 기타 지역사회 공헌 등																																								
월						합계	평균	비율																																																														
전체																																																																						
취약																																																																						

구비서류③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서류 (SEIS에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

제출서류

협동조합 외 법인

협동조합

요건4. 다양한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및 사전체크사 항	<input type="checkbox"/> 이사회 회의록 1회분	<input type="checkbox"/> 운영위원회 회의록 1회분	이해관계자- 의사결정구조
	<input type="checkbox"/> 이사회 명부	<input type="checkbox"/> 운영위원회 명부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대표 선출 동의서		
	<input type="checkbox"/>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이해관계자 구성이 50%초과 시 불인정 <input type="checkbox"/> 아래 순서로 의사결정구조 구성 및 실행(운영) - (주식회사 등) 정관개정→이사회 구성(등기부등본상 이사취임) →이사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신청일 직전 6개월 내 1회분 제출) - (법동조합) 정관개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위원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신청일 직전 6개월 내 1회분 제출)		

구비서류④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SEIS에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

제출서류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 가결산본(신청전월 가결산, 당기/전기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전문가확인원(갑지) <input type="checkbox"/> 재무상태표 <input type="checkbox"/> 손익계산서 + <input type="checkbox"/> 원가명세서 <input type="checkbox"/> 영업외수익(지원금 확인) <input type="checkbox"/> 이익 잉여금처리계산서 <input type="checkbox"/> 계정별원장(신청 직전월 기준 이전 6개월분) <input type="checkbox"/> 매입·매출장(신청 직전월 기준 이전 6개월분)	전문가확인증(갑지) 필요
------	--	---------------

구비서류⑤ '정관 및 규약 각1부 (SEIS에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

제출서류 및 사전체크사 항	<input type="checkbox"/> 정관 및 규약(공증 필요)	주식회사, 일반법동조합 등 영리법인																																	
	<p>*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단단체 등 정부부처에서 별도 정관 변경허가를 받는 조직형태의 경우</p> <input type="checkbox"/> 정관(공증불필요, 정관 변경허가 공문 제출) (* 설립 인가 공문 및(설립 후 변경이 없었을 경우), 또는 정관 변경허가 공문(정관 최종 변경본) 첨부하여 제출)																																		
	<table border="1"> <thead> <tr> <th>필수 기재 사항</th> <th>기재 여부</th> <th>확인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목적</td> <td></td> <td></td> </tr> <tr> <td>사업내용</td> <td></td> <td></td> </tr> <tr> <td>명칭</td> <td></td> <td></td> </tr> <tr> <td>주된 사무소의 소재지</td> <td></td> <td></td> </tr> <tr> <td>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라 운영방식 및 주요</td> <td></td> <td></td> </tr> <tr> <td>사량의 의사결정 방식</td> <td></td> <td></td> </tr> <tr> <td>유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td> <td></td> <td></td> </tr> <tr> <td>출자 및 용자에 관한 사항</td> <td></td> <td></td> </tr> <tr> <td>종사자의 구성 및 임원에 관한 사항</td> <td></td> <td></td> </tr> <tr> <td>재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td> <td></td> <td></td> </tr> </tbody> </table>	필수 기재 사항	기재 여부	확인 내용	목적			사업내용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라 운영방식 및 주요			사량의 의사결정 방식			유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용자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구성 및 임원에 관한 사항			재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요건6. 정관의 필수사항 요건7.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필수 기재 사항	기재 여부	확인 내용																																	
목적																																			
사업내용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라 운영방식 및 주요																																			
사량의 의사결정 방식																																			
유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용자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구성 및 임원에 관한 사항																																			
재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구비서류⑥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비, 창업자금, 운영경비 등을 지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SEIS에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

제출서류	<input type="checkbox"/> 정부나 지자체 지원사항 확인서류(양식활용)
------	--

원클릭 구비서류 간소화 (시스템 조회 후 등록)

제출서류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증명 <input type="checkbox"/> 표준재무제표증명 (*조회되는 가장 최근 시점지점 3년 분)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input type="checkbox"/> 부가세신고내역 <input type="checkbox"/> 거래처별합계표(매입/매출) <input type="checkbox"/> 납세증 <input type="checkbox"/> 4대보험 가입증명서(가입자명부) <input type="checkbox"/> 4대보험 완납증명서
------	---

제4장 사회적기업의 책임과 의무

- 1 사회적기업의 책임과 의무
- 2 사업보고
- 3 인증취소
- 4 인증서 반납

사회적기업의 책임과 의무

0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 '목적'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경영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사회가 정한 법 제도를 준수하고, 관습 및 윤리기준을 이행하여야 함

-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정부와 지역,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에 부응할 의무가 있음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철저히 준수할 의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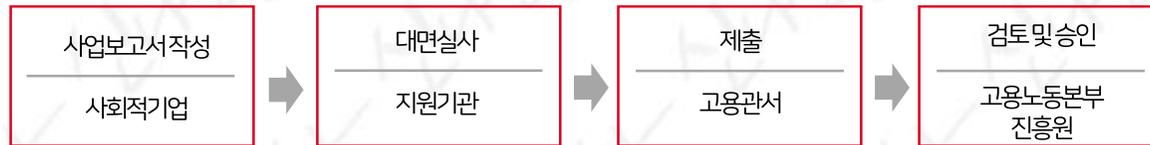
0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윤을 사회적기업의 유사 확대에 재투자함으로써 자립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

0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보고 등'

사회적기업은 경영활동에 대한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운영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을 수용할 의무가 있음

*인증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인증사회적기업 연 2회)



04 사회적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실현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 도전과 투자를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신뢰를 확보

사회적기업의 책임과 의무 : 사업보고

사업보고내용

사업보고서	기업현황	유급근로자 명부	구비서류 첨부
-------	------	----------	---------

사회적기업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인증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사회적 목적	※ 별지 작성	정관 변경여부	변경 없음 [] 변경 []		
인증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농(어)업회사법인 [] 영농(어)조합법인 [] 기타 []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사업	주업종 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사업	부업종 코드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1 사업보고서

기업의기본정보입력

#2 의사결정구조

다양한이해관계자로 구성된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진행한회의실적

#3 사회적 목적 재투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일 경우)

#4 재정성과 및 지원내용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 및 영업외 수입 등 재무현황

#5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 주 사업을 통해 추진한 실적

#6 정관·규약 및 출자구조

(기업현황) 정관 변경 등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출자구조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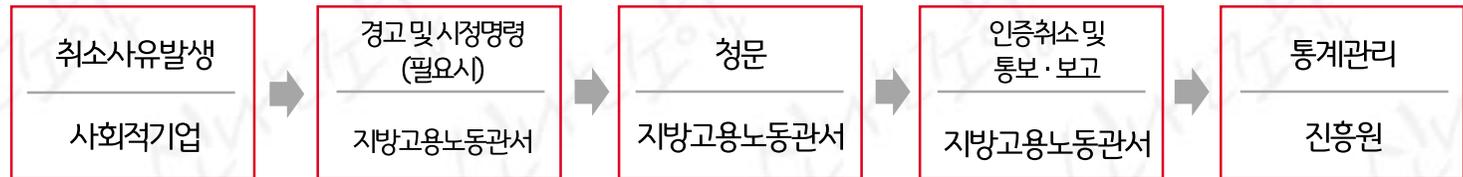
사회적기업 사후관리: 인증취소

인증취소

| 근거규정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및 시행규칙 제 17조(인증취소의 세부절차), 행정절차법 및 관계법령 준용

| 시정명령 절차



| 인증취소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시정명령없이인증취소)
- 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경고) 사회적목적,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사회적목적 재투자 (시정명령) 유급근로자 고용, 의사결정 구조, 정관이나 규약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고발되어 벌금형등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즉시인증 취소
 -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고의·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인증취소 여부 판단
-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이 아님에도 인증을 반납할 경우에는 인증 반납 사유가 아님을 고지하고 반려

사회적기업 사후관리: 인증서 반납

인증서 반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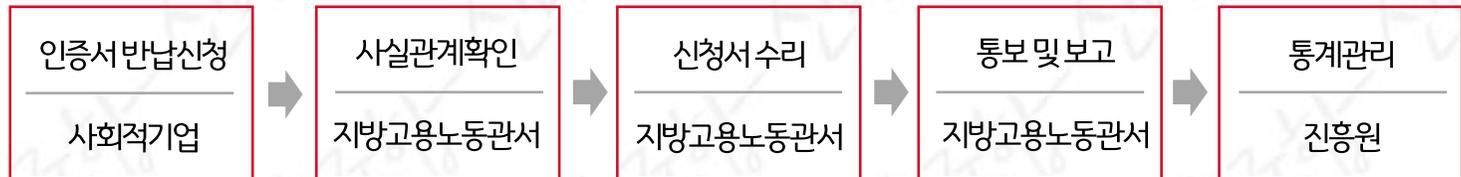
근거규정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제 1항 제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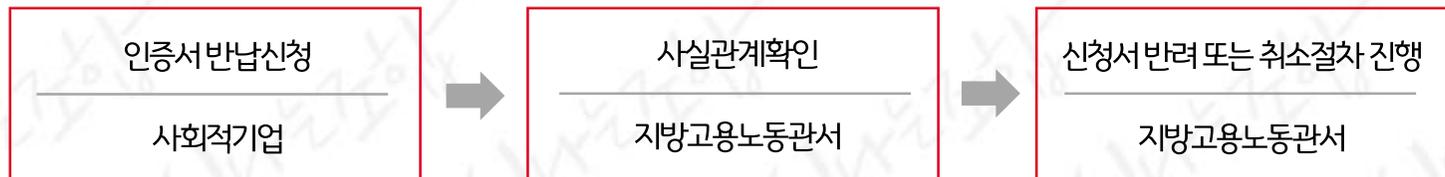
-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증을 반납할 수 있음

반납

✓ 경영악화 등으로 사회적기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



✓ 경영악화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



제5장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제도

- 1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개요
- 2 직접지원
- 3 간접지원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개요

01 직접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4대 사회보험 지원
- 세제지원

02 간접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 판로개척
- 자원봉사(프로보노)
- 경영컨설팅
- 융자 등 금융지원

03 기타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소셜벤처 경연대회 등

* 각 지원은 개별로 사업공고 → 신청 → 심사를 통해 진행되므로 각 지원별 공고문 및 지침을 확인해야 함

직접지원

(19년 이후 인·지정 및 재참여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내용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 지원인원: 최대 50인 ·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p>사회적기업 1~3년차각 40%</p> <p>*취약계층 20% 추가지원</p>	<p>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각 50%</p> <p>*취약계층 20% 추가지원</p>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월 200만원 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부담 · 지원인원: 예비사회적기업 1명,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 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 시 1명 추가 지원 ·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p>월 200만원 250만원 한도 3년 지부담률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p>	<p>월 200만원 250만원 한도 2년 지부담률 1년차 10%, 2년차 20%</p>
사업개발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연간 1억원 한도	연간 5천만원 한도
		지부담율 1호차 10%, 2호차 20%, 3호차 이상 30%	
사회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한도: 최대 50인 	인증 후 최초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지원 기간 4년	해당없음

* 각 지원은 개별로 사업공고 → 신청 → 심사를 통해 진행되므로 각 지원별 공고문 및 지침을 확인해야 함

간접지원

지원제도	지원내용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컨설팅: 인사/노무, 회계/세무, 법률/법무, 멘토형 등 - 전문컨설팅: 지속성장형, 공동형, 특회형 	0	0
공공기관 우선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권고 *대상: 중소기업제품 촉진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77개소(15년) 	0	해당없음
세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0	해당없음
모태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 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 사회적기업에 대해 투자(투자운용사) 	0	0

사회적기업가를 응원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본관200호
02-365-0330 / jfse@daum.net
www.joyfulunion.or.kr

